

제429회 국회  
(정기회)

#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5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7)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2)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4)
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61)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5)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8)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8)
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4)
1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9)
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9)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2025년도 국정감사 중인 출석요구의 건
16.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중인 고발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1.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7) ..... 2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2) ..... 2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4) ..... 2

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61) ..... 2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5) ..... 2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8) ..... 2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8) ..... 3
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4) ..... 3
1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9) ..... 3
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9) ..... 3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15. 2025년도 국정감사 중인 출석요구의 건 ..... 11
16.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1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7
17.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중인 고발의 건 ..... 17

---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법안소위에서 면밀히 심사해 주신 법률안들을 의결하고 올해 국정감사의 기관 중인 등을 채택한 후 지난 한 달간 실시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7)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2)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4)
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61)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5)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8)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8)

**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4)

**1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9)

**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9)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6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1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과 모경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및 인천광역시가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선거에 관한 특례 및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것으로 해방 이후 동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2013년 피해자 명부 발견 이후 제19대 국회부터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성안되지 못하다가 제22대 국회에서 공청회와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소위 심사를 통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는 이러한 오랜 입법 노력의 결과이자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의지를 공식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건의 객관적·중립적 규정을 위하여 제명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토 대학살사건’이라는 용어를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변경하여 제목을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고 국무총리 소속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구성, 진상규명 조사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서범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서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양 의원, 이상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범죄대응, 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희 의원, 양부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약물의 정의를 신설하여 약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정의하고, 둘째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부남 의원, 이성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나 본인의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된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위 신고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동시에 4급 이상 재직자와 퇴직자의 친족 채용, 승진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소위원회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이 없으시므로 바로……

토론하시겠습니까?

주호영 위원님.

○**주호영 위원**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안에 관하여, 우연히 보다 보니까 10페이지에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1923년에 일어났습니다. 1살이라도 지금 100살이 넘었는데, 직계존속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정비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위원이—간토 대학살사건 이름이 이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바뀌었는데—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인데 이게 다른 법을 그대로 베껴 와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1923년에 있었던 일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사람이 지금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점에 관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저 마쳤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마쳤습니까?

○**주호영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것.

○**위원장 신정훈**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일단 이 법 자체가 기존의 대일항쟁기법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니까 조문을 그대로 베껴 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 이런 것은 법 자체의 완결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것 좀 빼고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전문위원 조문상** 그러면 일단 자구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해서……

○**주호영 위원** 이것 자구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사 바꾸는 게 자구지 이것은 자구가 아니고 법 기본적인 건데 이것을 빼고 해야지 이대로 하면 법이 말이 아니지.

○**전문위원 조문상** 일단은 위임을 해 주시면 그것에 관해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빼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전문위원에게 어떻게 위임을 해? 의결을 조금 늦추더라도 정리해 가지고 하셔야지.

○**윤건영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신정훈** 잠깐…… 그러면 간토 이 법안만 다음 회기에?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 중에 전문위원이랑 협의를 해서 자구 정리하시고 나머지 진행하시고 최종 맨 마지막으로 법안에 대해서 의결하시면 되지요. 굳이 그것 때문에 늦출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명백하잖아요, 그 부분만 빼 달라는 건데.

○**주호영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전문위원 조문상** 그러면 바로 저희가 정부 측과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바로 전문위원이 정부 측과 협의해서 그 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법률안 의결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2항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8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1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4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정안이므로 축조심사가 필요합니다.

제정안의 제명부터 제11조(의사의 공개)까지 이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12조(자문기구의 설치)부터 제20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까지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조(보고서의 작성)에서부터 부칙까지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주호영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행정안전부 소관 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인천광역시 신설 자치구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 확대와 생활 안정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간토 대지진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으로 한일 양국 간에 어두웠던 과거를 극복하고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오늘 의결된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잘 살려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위해 관련 규칙을 마련하는 등 후속 사무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총 2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경찰청장이 국제공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물운전과 관련하여 약물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의 알선·광고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부 관계자분들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서범수 위원 잠시만요.

우리 장관님 오셨으니까 잠시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말씀하십시오.

○서범수 위원 장관님, 오늘 보도에 보면 행안부에서, 지난 7월 달에 대통령께서 산청에 가셔 가지고 부군수가 조금 소통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부군수 신분상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입니까, 이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서범수 위원 이거 확인이…… 지금 언론보도 났어요,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확인됐다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대통령 보고뿐만 아니라……

○서범수 위원 어떻게, 왜 이런…… 아무리 집권 초기지만 완전히 공무원들 군기 잡기 아닙니까?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행안부에서 소통이 잘못됐다고, 대통령께 보고된 부분이 조금 허술하다고 신분상 조치를 하라라고 행안부에서 지시를 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그 산청에서 산사태가 많이 났던 지역에 대한……

○서범수 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그걸 자치단체나 이런 데 맡겨야 되지 행안부가 직접 ‘대통령께 너가 허위보고했으니 신분상 조치해’, 이거 완전히 집권 초기에 공무원 군기 잡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민들께 많은 오해와 이런 걸 유발했기 때문에.....

○**서범수 위원** 아니지요. 대통령한테 불편하게 해 놓으니까 그렇게 지시한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이해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서범수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가만 계세요.

○**이해식 위원** 부군수가 사망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돼.....

○**서범수 위원** 가만 계세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왜.....

    이해식 위원님이 행안부장관입니까?

○**이해식 위원** 아니, 나도 신문을 봤어요.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식 위원** 신분상의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의의무.....

○**박덕흠 위원** 아니,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신정훈** 자, 자.....

○**서범수 위원** 그래, 주의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장 신정훈** 서범수 위원님.

○**윤건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지 이게 장관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범수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내가 확인할 게 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잠시만요.

○**윤건영 위원** 장관한테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늘. 오늘은 질의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해식 위원** 아니, 산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해로 죽었는데 자기 동네에 사람이 죽은지 안 죽은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부군수가.

○**서범수 위원** 아니, 그래서 잠시 양해 구한 것 아닙니까, 제가?

○**모경종 위원**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산청군민들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위원장 신정훈** 아니아니,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잠시만, 그래서.....

○**윤건영 위원** 아니, 장관한테 질의가 제한되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서범수 위원** 장관님, 장관님은 경고조치하셨다고는 하지만, 가벼운 경고조치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공무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제가 경고조치한 사실은 있는데 신분상 조치를 물어보셔서.....

○**서범수 위원** 신분상 조치를 하려 했는데 이제 경고조치를 한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신분상 조치는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즉답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경고조치를 했다는 거는 공무원한테 낙인효과를 찍은 것 아닙니까, 낙인 효과. 이 공무원이 그러면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해요?

○**위원장 신정훈** 서범수 위원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정도의 경고조치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과도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주의를 주어야지요. 공직자가 그런 태도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자, 잠깐만요.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나선다, 지금.

    너무 공무원 군기 잡기 하지 마세요. 겁이 나서 공무원 하겠습니까, 이거?

○**위원장 신정훈** 자, 서범수 위원님.

○**이해식 위원** 공무원 군기를 잡는 게 아니고……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중단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자기 지역에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들, 잠깐만요.

○**서범수 위원** 이해식 위원님, 내 이해는 하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발끈해요.

○**위원장 신정훈** 자, 서범수 위원님.

○**이해식 위원** 내가 대통령 얘기 나와서 발끈하는 게 아니에요.

○**서범수 위원** 발끈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식 위원** 나도 구청장을 해 본 사람이에요.

○**위원장 신정훈** 자……

○**서범수 위원** 그래서 구청장 해 봤는데 그거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해식 위원** 자기 관할 지역에 수해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고동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아니아니요. 자자, 잠깐만요.

    제가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장관과 위원들 간에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잠깐 자료 내지는 의견 제시 정도를 생각하고 발언을 드렸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을 또 질문 답변 방식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따로 의사일정을 잡아서 또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분만 잠깐……

○**위원장 신정훈** 고동진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시지요. 의사일정 발언은 저한테 하세요.

○**고동진 위원** 아니아니, 1분만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발언 저한테 하십시오, 그러면.

○**고동진 위원** 아니, 어떤 경우에도 위원이 예를 들어서 발언을 할 때는 다른 위원들은 자제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위원장님이 좀 제재를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님께서 가만 보시고서…… 그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고동진 위원** 앞으로는 위원이 어느 누구고 발언을 할 때 누가 이렇게 끼어들고 이러는 거는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채현일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신정훈** 자, 오늘 의사진행의 과정에서 저는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었고 의사진행발언의 차원에서 제가 서범수 위원한테 기회를 드렸고요. 또 의견 제시 정도로 생각했는데 논란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의사진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

## 15.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40분)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기관장, 소속 기관장, 국장급 이상 직원 등으로 일괄 구성되는 기관증인만을 채택하고 나머지 일반증인은 위원님들의 신청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10월 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증인 명단은 우리 위원회의 전례에 따라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6.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1분)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입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범수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정훈** 아니, 이……

○**서범수 위원**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신정훈** 예.

○**서범수 위원** 위의 조치사항들 다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 신정훈** 먼저 박덕흠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서범수 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연희 위원** 여기도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박덕흠 위원입니다.

위증 고발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제방 절개가 첫 번째예요. 제방 절개가 없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도 아마, 김영환 증인이 수사도 받았었고 여러 가지 경로가 다 있었는데 제방 절개가 없었다고 한 발언을 가지고 위증 고발을 한다는 건 좀 안 맞는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제방 절개를 했다는 건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방 절개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위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취지는 미호천 다리 밑의 임시 제방 붕괴를 갖고 얘기를 한 거지 본류 제방을 갖고 얘기한 거는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거는 본류 제방 절개가 없었다는 취지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참사 당일 CCTV를 보고 있었다는 발언, 이 부분도 제가 현장을 갔을 때도 얘기했지만 김영환 지사가 ‘우리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이라고 했고, ‘내가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우리’라는 건 자기의 관할하는 공무원들이 보고 있었다는 취지였지, 이것이 내가 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증했다는 것은 좀 터무니없는 그런 억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기관보고 시 재난상황 점검 전화 10건,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수시로 재난에 대한 문제가 있는 지역에다가 다 전화를 하고 한 것을 갖고 열 군데 이상 통화를 했다, 점검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나셨습니까? 이야기 끝나셨냐고?

○**위원장 신정훈** 예.

○**박덕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한 거지 고의적으로 위증을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위증 고발을 한다 하면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또 여당 위원님들이 김영환 지사를 타깃으로가 아니라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결국은 김영환 지사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환 지사 위증 고발 이 부분은 나는 개인적으로 말꼬리를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위증 고발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국정조사가 끝났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확인한바 오송 참사는 예견이 가능했고 예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와 관계 기관의 무책임과 늑장대응으로 13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인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북도지사는 끝내 책임을 회피했고 ‘죽은 감리단장은 국정조사를 두려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자명예훼손을 하는 등 막말과 위증,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충청북도는 홍수 취약지구 일제조사에서도 제방 절개 공사지가 있었음에도 위험조사에 누락해 피해를 키웠고 제때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킨 주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충북도지사를 기소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신고를 확산·전파하지 않아서 사고를 키웠던 충북 공무원은 기소유예 이후 오히려 승진도 했습니다. 이는 도민과 유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며 정의와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충북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그 오송 참사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던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31살짜리 청년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하던 입장에서 충북도지사에 대한 기소와 철저한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고 충북도민들의 안전한 충북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도 이에 대해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충북도지사에 대한 위증 고발과 관련해서 가장 큰 게 보면 그날 참사 당일 날 김영환 지사가 CCTV를 봤느냐 안 봤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지도 않아 놓고는 당신이 왜 본 것처럼 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논지는.

사실은 처음에 기관보고 할 때 충북도지사께서 발언하실 때 조금 그런 오해의 소지로 이야기를 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합니다만 그런데 현장조사 때 질의응답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문회 때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해명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굳이 이거를 가지고, 해명된 상황을 굳이 위증으로 고발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충북도지사의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라는 개념 안에는 나뿐만 아니고 ‘우리 충북도에서는’이라는 그런 의미로 써진 부분이라서 이거는 과연 위증 고발에 대한 어떤 구성요건이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조금 의문시 되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재방 절개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그때 어차피 미호천 임시 제방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제방에 대한 절개 부분을 우리 도지사께서 착각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합니다.

아울러 곳곳에 전화를 해서, 충청도에서 열 곳 이상 전화를 했고 한 부분은 비록 서류상에는 2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인이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한 열 군데 정도 된 걸로 진술을 한 사항이라서 이게 과연 위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김영환 도지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항고되어서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맡겨놓는 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참사가 발생했던 오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정조사에 함께 노력해 주신 여야 위원님과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가 발생한 뒤 2년 만에 조사가 실시된 처음, 최초의 사례입니다. 한 달간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유가족분들이 왜 그토록 국정조사를 요구했는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벌받아야 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그런 절규를 왜 하셨는지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사고 원인은, 선행 요인으로는 제방 붕괴가 원인이고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교통 통제를 비롯한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제방 붕괴에 대한 원인에만 집중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사 진행 과정에서 자연재난과 직원들의 진술이 다 하나같이 다릅니다. 특히 재난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고 접수와 보고·전파 체계와 관련해서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모종의 은폐 의혹이 드러난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접수를 받은 주무관이 자기는 누구에게도 전파하지 않았다, 보고하지 않았다 하는데 사후에 그런 것들을 재난안전실장과 과장은 보고받았다고 하는,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르고,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은 일곱 차례에 걸쳐서 재난교육훈련을 분명히 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고소장에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식으로 해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재난안전과 직원들의 진술과, 증언과 공소사실도 다른 것들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오송 참사에 대해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그 과정에서 검찰의 축소 수사 내지는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혹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수사도 분명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명이 되고 그리고 처벌받아야 될 책임자가 처벌받아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비통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정조사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재수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위원장 신정훈 또 토론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범수 위원 간단하게……

○박덕흠 위원 간단하게 좀 할 얘기가 남아 가지고……

○이광희 위원 아니, 두 번 돌아갈 거면 한 번씩 더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윤건영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할게요.

○박덕흠 위원 하세요.

지금 잠깐 얘기 좀 1분만……

○윤건영 위원 그러면 하시지요.

○서범수 위원 1분만 할게요.

○윤건영 위원 저희도 하시지요.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1분만 하십시오.

○박덕흠 위원 저는 국정조사가 지금 위증에 대해서 자꾸만 초점이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실 제방으로 인해서 첫 번째 사고 원인이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사고 당시에 대책이 확실히 부실해 가지고 사고가, 오송 참사가 일어난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이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충북도나 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은 지금 항고가 돼 있기 때문에 재수사는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다시 가릴 수가 있는데 이 위증 부분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그만큼은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위증의……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박덕흠 위원 정말 위증 정도가 될 것인지 이것은 파악을 해 보시면 알 거니까……

항고, 재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이달희 위원님 1분 하십시오.

○이달희 위원 이 국정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 여의도 안팎의 풍선거를 앞두고 김영환 지사가 타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한 달 동안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정말 희생자의 명예와 그리고 희생자의 그 안타까움 그리고 유가족의 어려운 마음 그리고 앞으로 추모 이런 문제를 집중으로 부각도 하고 또 쟁기고 이런 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지사의 발언을 보니까 육하원칙에 뚝 떨어지게 발언을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국정조사 내내 안타까운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에 걸쳐서 현장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CCTV나 모든 게 위증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항고 중이니까 조사를 확실히 해라라는 의견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 국정조사에 와서……

○위원장 신정훈 정리하시지요.

○이달희 위원 위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좀 정리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나뉘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국회법 112조와 71조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반대를 한다고요, 이것?

○서범수 위원 위증 고발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이달희 위원 위증 고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진짜 너무들 하십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이게 위증이 됩니까?

○이광희 위원 이 정도 가지고 합의 처리가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박덕흠 위원 전부 다 이러면 우리도 위증에 다 고발되게? 이런 것을 갖고 한다는 게……

○이달희 위원 아니, 위증 고발하는 부분을……

○이광희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좀.

○이달희 위원 위증 고발하는 부분을 반대한다는 거지요. 다른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서범수 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위증 고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덕흠 위원 이런 내용을 갖고 위증 고발을 하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광희 위원 아니에요, 위원님! 이게 합의 처리 아니면…… 어떻게 반대를 하실 수 있어요?

○박덕흠 위원 소리를 왜 이렇게 질러 대……

○서범수 위원 그냥 가세요.

○이광희 위원 뭘 어디를 가요? 내가 화장실 가려고 그랬는데……

○서범수 위원 그냥 가세요.

○박덕흠 위원 아니, 무조건 소리만 질러 대요?

○고동진 위원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박덕흠 위원 뭐 혼자뿐이 없는 거야, 맨날 소리만 질러 그냥……

○위원장 신정훈 자, 그만하세요.

○이광희 위원 아니, 뭔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합의 처리 안 되면 뭐가 합의 처리됩니까?

○박덕흠 위원 아니, 이 양반이 빼 하면 소리를 질러……

○이광희 위원 이 양반이 뭐예요, 이 양반이!

○박덕흠 위원 뭐하는 거야, 이 양반이!

○이광희 위원 이 양반이 뭐야!

○고동진 위원 아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이달희 위원 아니, 뭐하세요?

○서범수 위원 아니, 혼자만 국회의원이에요?

○이광희 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위원장 신정훈 자, 그만하세요.

○고동진 위원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서범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

○이광희 위원 쪽팔린 줄 아세요, 좀.

○위원장 신정훈 자, 그만하세요.

○박덕흠 위원 좋게 얘기를…… 살살 얘기해, 소리 지르면 장땡이 아니야.

○이광희 위원 이 정도도 합의 처리를 못 하는 국회가 이게……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2인 중 출석 18인, 찬성 14인, 반대 4인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7.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증인 고발의 건

(10시59분)

○위원장 신정훈 다음으로 이번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행한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하는데 대하여 간사님들 간에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증은 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행위로서 본 위원장은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77조, 71조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증인 김영환의 지난 10일 기관보고 시 위증 혐의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에 따라 위증 등의 죄로 고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한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 ○출석 위원(21인)

고동진 권칠승 김성희 모경종 박덕흠 박정현 서범수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연희 이해식 정춘생 주호영  
채현일

### ○청가 위원(1인)

박수민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자치분권국장 박연병

법무담당관 이명구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기획조정관 도준수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국제협력관 이준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순명

국제공조담당관 박재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법제국장 도희락